

『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9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의정역량을 강화하고, 의회간 화합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제6조)
- 체결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8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회와 국내·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

려는 것으로 보임.

- ◆ 또한, 체결식, 사후관리와 협약해지,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도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됨.
- ◆ 조례안 전체적인 내용상 흠결이 없고 상위법령 또한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에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 됨.